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-80호

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 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4호(2008.08.2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및 구역 결정되고 송파구고시 제2008-54호(2008.09.18.)로 사업시행지구분할 결정되어, 2008.12.31.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2-29호(2012.04.26.)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5-55호(2015.07.0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,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(☎02-2147-2897)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2-407-8353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4월 7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

나. 면적 : 61,806.7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송재병)
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6-13번지 동인빌타운 2층

4.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일 : 2022년 04월 06일

5.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없음)

다.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(변경없음)

라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등(변경)

- 변경 전

토지 소유권 변환	총면적	토지 용도 변환	용도	택지				정비기반시설				
				소계	공동주택	단독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계	도로	공원	광장	녹지
				시행전 (㎡)								
	61,806.7㎡ (346필지)		시행후 (㎡)	49,783.4		46,875.10	2,908.30	12,066.70	12,066.70			
				43,504.4	42,337.27		1,167.13	18,302.30	11,693.60	5,381.30	791.30	436.10

- 변경 후

토 지 소 유 권 변 환	총면적	토 지 용 도 변 환	용 도	택 지				정비기반시설				
				소계	공동 주택	단독 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계	도로	공원	광장	녹지
	61,806.7㎡ (347필지)		시행전 (㎡)	49,210.0		46,301.70	2,908.30	12,640.10	12,640.10			
			시행후 (㎡)	43,504.4	42,337.27		1,167.13	18,302.30	11,693.60	5,381.30	791.30	436.10

※ 오기·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

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(변경없음)